

<별첨 1>

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 조문 변동표

개 정 전	개 정 후		비 고
제1절 농어민지원을 감면	제1절 농어업 지원		
§261 ①·②	현행과 같음		
§262 ①·②·③	현행과 같음		
§263 ①·②·③	현행과 같음		
§264 ①·②	현행과 같음		
§265 ①<삭제> ②	§265		○ 농어촌 空家
§266 ①·②·③·④	현행과 같음		
⑤	① 항에 통합	⑤ 항에는 §290 ② 1·2·4·5호, ③ 1·2·7·8호를 이관	○ 농협·수협· 산림조합등
⑥	현행과 같음		
	⑦<신설>	⑦ 항 에 는 § 2 6 7 ④ · ⑤ 항을 이관	
§267 ①·②·③	현행과 같음		
④·⑤	§266⑦	④·⑤<삭제>	
제2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	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		
§268 ①	§268		
②	<삭제>		○ 령§146의2에 규정, 비과세
§269 ①·②·③· ④	현행과 같음		
⑤	§281 ①·②·③	⑤ 항에는 대한주택 보증(주) 감면신설	○ 주택보증주식 회사 ○ 도시가스사업자
⑥	§286 ③3호	⑥ <삭제>	
⑦	<삭제>		○ 에너지관리공단
⑧	§286 ①	⑧ <삭제>	